

대구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나3072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나30729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3. 10 선고 2022가단13818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 항소인 A

변론종결 2024. 4. 24.

판결선고 2024. 6. 26.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3. 10. 선고 2022가단13818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21. 12. 6. 체결된 매매계약을 16,406,50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6,406,50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가, 나 부분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11행의 “제출하였다.”를 “제출하여 그 무렵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2022. 4. 26.” 다음에 “C은행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는“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3행의 ”피고를 상대로 2022. 11. 3.“을 ”B를 상대로 2022. 8. 26.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12행의 ”마쳤다.“를 ”피고에게 마쳐주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1행의 ”채권액인 18,664,970원의“를 ”채권액 중 원금 일부 회수액을 공제한 원금 잔액 16,406,509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5, 6행의 ”있다. 한편 갑 제5호증의“을 ”있고, 무자력 상태에 있던 B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고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7행의 ”60,400,000원에 이른다.“를 ”60,400,000원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9행의 ”18,664,970원과“를 ”16,406,509원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안재, 판사 이재덕, 판사 박만호

별지